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만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608

발 의 년 월 일 : 2023년 03월 29일
발 의 자 : 유만희, 강석주, 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박ㆍ석, 박영한, 박환희, 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 신복자, 옥재은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이봉준, 이상욱, 이종태, 최민규, 허ㆍ훈, 홍국표 의원(38명)

1. 제안이유

○ 서울시 ‘보훈예우수당’의 지급대상 범위를 현행 ‘4ㆍ19혁명유공자,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’에서 ‘전상군경(戰傷軍警), 공상군경(公傷軍警) 및 공상공무원’까지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, 보훈수당 지급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기하고자 함.

○ 한편, 단서 규정은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서 그 내용 및 적용범위가 명확해야 하나, 현행 조례에서 ‘보훈수당 중복지급 금지 규정’의 내용 및 적용범위가 불명확하여 해석과 적용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, 이를 정비하여 입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 전상군경, 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을 추가하여 규정함.(안 제7조제4항제1호)

나. 현행 제7조제3항제4호 단서 및 제4항제3호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보훈수당 중복지급 금지 관련 내용을 별개의 항으로 신설하여 명확히 규정함.(안 제7조제5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 기본법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제7조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, 제6호, 제12호, 제13호 및 제15호

3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 및 제3호

⑤ 제3항에 따른 생활보조수당과 제4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및 다음 각 호의 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참전명예수당

2. 「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생활지원수당

3. 그 밖에 다른 조례(자치구 조례는 제외한다)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복지 및 생업지원) ①·② (생 략)	제7조(복지 및 생업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(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)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하며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보조수당 월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. 다만,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참전명예수당, 「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보훈예우수당, 「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독립유공생	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활지원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생활보조수당과 중복지급하지 아니한다.	
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(유족 및 가족 제외)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예우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.	④ ----------.
1.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제12호, 제13호	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제4호, 제6호, 제12호, 제13호 및 제15호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 및 제3호	3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 및 제3호
다만,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다른 조례(자치구 조례는 제외한다)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	
<신 설>	⑤ 제3항에 따른 생활보조수당과 제4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및 다음 각 호의 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.

	1.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2. 「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생활지원수당 3. 그 밖에 다른 조례(자치구 조례는 제외한다)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
⑤ (생 략)	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